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29(목) 10:40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9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2. 21
- 라. 회부일자 : 2022. 12. 21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간주처리	
계	771,331,611	771,331,611	622,601,831	12,006,600	54,447,176	82,276,004	- <53,068,736>
일반회계	753,864,214	753,864,214	608,145,854	12,006,600	53,695,996	80,015,764	- <50,868,736>
특별회계	17,467,397	17,467,397	14,455,977	-	751,180	2,260,240	- <2,200,000>
의료급여	820,035	820,035	636,085	-	166,950	17,000	-
주민소득	642,392	642,392	291,400	-	350,992	-	-
주차장	16,004,970	16,004,970	13,528,492	-	233,238	2,243,240	- <2,200,000>

#### 4. 푸른미래도시국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교부세(금)	국시비보조금	구비
합계 : 3개 부서 / 14건		10,808,402	8,407,012	2,800,000	1,430,220	2,831,192
주거정비과 (3건/461,929천원)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456,287	330,000		290,000	40,000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366,000	107,542		101,892	5,650
	반환금 기타	64,984	24,387			24,387
공원녹지과 (9건/7,875,551천원)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3,411,200	2,043,250			2,043,250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	900,000	850,000	850,000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운영	660,700	600,000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1,700,000	1,700,000	1,000,000		
	산사태 및 계류 복구공사	1,000,000	950,000	950,000		
	호암산자락 도시농업농장 조성	1,087,000	1,082,724		912,724	170,000
	도시농업 체험센터 운영	712,651	498,405			498,405
	도시농업공간 조성	190,920	99,000		49,500	49,500
	어린이텃밭 조성 및 운영	234,728	52,172		52,172	
	건축과 (2건/69,532천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23,932	23,932		23,932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149,468	45,600		36,480	9,120

## 5. 검토의견

-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14건 84억 701만원으로  
- 주거정비과 : 3건 4억 6,192만 9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합 계 ( 3건 )		887,271	461,929	
1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456,287	330,000	· 이월사유 : 연도 내 지출 불가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의한 추진 일정 지연으로 용역 미계약에 따라 집행 불가 - 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22.10.11.)으로 연도 내 계약 불가능
2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366,000	107,542	· 이월내역 : 별장길 점포 앞 정비 · 이월사유 : 별장길 간판개선사업 제작 및 설치 공사 발주 후 집행 잔액에 대해 이월하여 2023년 별장길 점포 앞 정비공사 발주 예정(시설비 107,542,000원)
3	반환금기타	64,984	24,387	· 이월내역 :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월 · 이월사유 : 연도 내 지출 불가 - 시의 반납예산 미편성 때문에 국토부가 반 납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아 반납일정 변경

- 공원녹지과 : 8건 78억 7,555만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합 계 ( 9 건 )		9,897,209	7,875,551	
1	가산동생활권 공원조성	3,411,200	2,043,250	· 이월내역 : 이의재결 보상비, 용역비 및 공사비 · 이월사유 :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23년 이의재결 예상되며 집행시기 미도래
2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	900,000	850,000	· 이월내역 :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사업 공사비 · 이월사유 : '22년 10월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으로 설계용역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3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운영	660,700	600,000	· 이월내역 : 유아숲체험원 재조성사업 공사비 · 이월사유 : `22.12.23.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월하고자 함
4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1,700,000	1,700,000	· 이월내역 : 공사비 · 이월사유 : `22.11.30.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설계 용역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5	산사태 및 계류복구공사	1,000,000	950,000	· 이월내역 : 감리비 및 공사비 · 이월사유 : `22.8.31.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설계 용역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6	호암산차락 도시농업농장 조성	1,087,000	1,082,724	· 이월내역 : 토지매입비 등 · 이월사유 : 대상지변경(토지매입 협의불응)으로 인한 사업지연, 연도내 지출불가
7	도시농업체험센터 운영	712,651	498,405	· 이월내용 : 도시농업체험센터 운영 · 이월사유 : 시흥계곡 42초소 준공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불가
8	도시농업 공간 조성	190,920	99,000	· 이월내역 :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 이월사유 : 시흥계곡 공원조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불가
9	어린이텃밭 조성 및 운영	234,738	52,172	· 이월내용 : 어린이텃밭 조성 · 이월사유 : 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텃밭조성 포기 어린이집 발생

- 건축과 : 2건 6,953만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합 계 ( 2건 )		173,400	69,532	
1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23,932	23,932	· 이월내용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차점검 (정밀점검) · 이월사유 : 집행시기 미도래 - `22. 12. 시비 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2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149,468	45,600	· 이월내용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 차보조금 및 구비 · 이월사유 : 집행시기 미도래 - `22. 12. 시비 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사업들은 연도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여부나 행정 절차, 사업효율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명시이월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